

블록 생산 중 큐빙기에 끼임



🚧 재해개요

2024.06.00.(토) 14:00경 충북 충주시 소재 ㈜이의 콘크리트 블록 생산 공장에서, 블록 적재 전 큐빙기* 하부에 이송된 블록 배치 오류를 조정하기 위해 큐빙기를 정지하지 않고 가동 중인 상태에서 작업자가 상체를 넣어 점검 중 오작동에 의해 하부에 끼어사망함

* 큐빙기란 블록 일정량이 센서에 감지되면 4개의 클램프로 블록을 한번에 집어들어 레일을 따라 이동하여 파렛트 위에 적재하는 설비의 명칭



🧾 발생원인

- ▶ 블록조정 작업 시 설비 운전정지 미실시
- 재해지점에는 즉시 사용 가능한 비상 정지 장치가 부재하였으며, 자동으로 작동되고 있는 큐빙기를 정지하지 않고 블록의 배치상태를 조정하려 함
- ►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
- 큐빙기로 향하는 지점에 울타리가 없거나, 출입문이 상시 열린 상태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함
 - ▶ 큐빙기 협착위험점 방호울 부재
- 큐빙기 작업반경 내에는 유압클램프에 의한 협착, 적재물 낙하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지만, 접촉 방지를 위한 방호울이 부재함

(1)

예방대책

1 비정형 작업 시 운전정지 철저

- 생산 관련된 설비 및 기계를 정비청소 급유 검사 수리 교체 조정 작업을 할 때 해당 설비 및 기계의 운전을 반드시 정지하여야 함

2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실시

- 큐빙기 출입문에 인터록 장치를 연동시켜 근로자가 문을 여는 경우 자동으로 설비가 정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함

3 큐빙기 협착위험점 방호울 설치

- 큐빙기 작동 반경 내에는 근로자 협착 우려가 있으므로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접근을 차단시켜야 함

※ 본 OPS는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

